

82 (第18回-第4次)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본문중 “15,661명”을 “15,760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4,881명”을 “4,980명”으로 한다</p> <p>표1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중 “16,369명”을 “16,468명”으로 하고, 동표의 2. 본청·소방학교·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정원란중 “4,881명”을 “4,980명”으로 한다.</p> <p>표2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중 “16,019명”을</p>	<p>“16,118명”으로 하고, 동표의 2. 본청·소방학교·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정원란중 “4,881명”을 “4,980”명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중 보건복지국(보건위생과)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주 관 국</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사 무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근 거 법령</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수임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보건복지국 (보건위생과) </td><td style="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1. 이·미용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1981.11.30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와 1981.12.1 이후 이·미용사 자격인정 전문대학 (또는 동등학력 인정자) 및 고등기술학교졸업자종 졸업당시 주소가 타 시·도로 되어 있던 자가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나. 면허취소 및 면허의 정지 </td><td style="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td><td style="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구 청 장 </td></tr> </tbody> </table>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보건복지국 (보건위생과)	1. 이·미용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1981.11.30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와 1981.12.1 이후 이·미용사 자격인정 전문대학 (또는 동등학력 인정자) 및 고등기술학교졸업자종 졸업당시 주소가 타 시·도로 되어 있던 자가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나. 면허취소 및 면허의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구 청 장	<p>별표중 교통관리실(운수물류과)란의 제1호의 타목·파목·하목 및 더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같은란같은호중 거목 및 러목과 같은표같은</p> <p>란 제18호·제19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표같은란의 제6호 내지 제17호는 이를 삭제한다.</p>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보건복지국 (보건위생과)	1. 이·미용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1981.11.30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와 1981.12.1 이후 이·미용사 자격인정 전문대학 (또는 동등학력 인정자) 및 고등기술학교졸업자종 졸업당시 주소가 타 시·도로 되어 있던 자가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나. 면허취소 및 면허의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구 청 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주 관 국</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사 무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근 거 법령</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수임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교통관리실 (운수물류과) </td><td style="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1.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거.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 러.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법 제9조·법 제13조제7항·법 제18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18. 자동차 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td><td style="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27조, 동법시 행령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 동법 제52조(동법시 행령 제17조제2항제24호)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td><td style="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구 청 장 </td></tr> </tbody> </table>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교통관리실 (운수물류과)	1.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거.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 러.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법 제9조·법 제13조제7항·법 제18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18. 자동차 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27조, 동법시 행령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 동법 제52조(동법시 행령 제17조제2항제24호)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구 청 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교통관리실 (운수물류과)	1.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거.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 러.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법 제9조·법 제13조제7항·법 제18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18. 자동차 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27조, 동법시 행령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 동법 제52조(동법시 행령 제17조제2항제24호)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구 청 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교통관리실 (운수물류과)	19.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21 청문(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3조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34호	구 청 장

별표의 건설국(치수과)란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같은란 중 제3호는 이를 삭제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건 설 국 (치수과)	1. 하천(국가하천은 제외하되, 마목은 그러하지 아니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 나. 하천대장의 작성·보관, 등본의 교부·열람, 기타 필요한 사항 조치 다. 하천부속물의 관리·점용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라. 하천유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한강을 제외한 국가하천 포함, 다만, 한강 둔치의 청소업무는 구청장이 시행하며, 한강에 대한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는 한강관리소장이 시행) 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사.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 아. 하천의 점용허가(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수의 사용허가를 제외한다)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 자.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차.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등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카. 점용료등의 감면 타. 고시된 하천예정지와 연안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파.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및 이에 따른 조치	○ 하천법 제4조 ○ 동법 제14조 ○ 동법 제15조 ○ 동법 제21조 ○ 동법 제28조 ○ 동법 제30조 ○ 동법 제31조 ○ 동법 제33조 ○ 동법 제36조 ○ 동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 동법 제40조 ○ 동법 제58조	구 청 장

84 (第18回-第4次)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전 설 국 (치수과)	하. 과오납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너.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더. 하천감시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명령 러.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등 필요 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 머.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 버.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 서. 하천구역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 어.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저.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처.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 커. 허가수수료의 징수·감면 터.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페.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 2. 하천국유화에 따른 조치(지목변경, 등기 말소의 촉탁, 관리청명 청첨기)	○ 동법 제59조 ○ 동법 제64조 ○ 동법 제65조 ○ 동법 제68조 ○ 동법 제69조 ○ 동법 제72조 ○ 동법 제73조 ○ 동법 제74조 ○ 동법 제75조 ○ 동법 제76조 ○ 동법 제77조 및 제78조 ○ 동법 제80조 ○ 동법 제81조 ○ 동법 제88조 ○ 동법 제3조	구 청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환경관리실(폐기물시설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관 국(과)	사 무 명	비 고
환경 관리실 (폐기물 시설과)	○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 양천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 강남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